



다케시마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

발행·일본국 외무성

100-8919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전화 +81-(0)3-3580-3311

<http://www.mofa.go.jp/>

2014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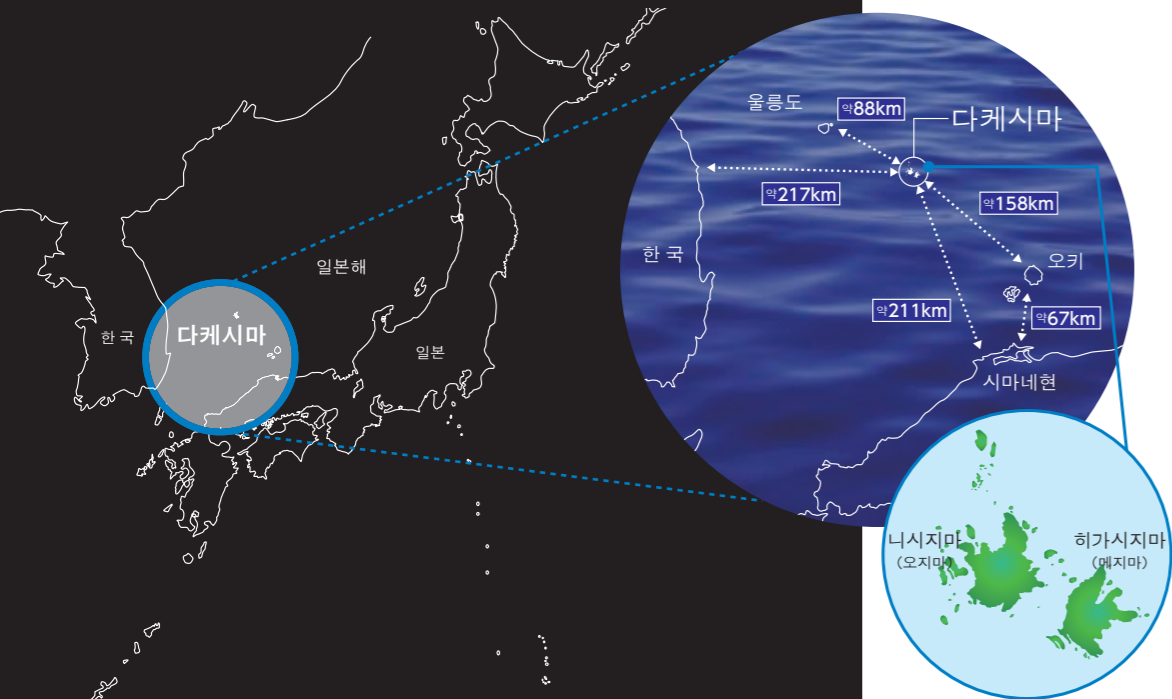
일본국 외무성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 다케시마 DATA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합니다.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지마(오지마)의 2개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약 0.21km²입니다. 각 섬은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화산섬으로 식물과 식수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표지사진 : 구와바라 시세이

contents

Part 1 다케시마 문제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 2
-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다케시마 불법 점거..... 3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 제안 4

Part 2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 다케시마의 인지/다케시마의 영유..... 5
-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6

Part 3 다케시마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 답합니다

- Q.1 한국측의 고지도·고문헌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7
- Q.2 1905년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 Q.3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8

Part 1 다케시마 문제의 시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

●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독립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미·영 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한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해줄 것을 요망한다'라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다케시마도 추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 대사의 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어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동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양코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되었지만,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키워드 해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일본과 48개국 이 서명했습니다. 1952년 4월 28일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As regards the island of B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다케시마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한 1951년 8월의 미국 러스크 국무차관보(극동담당) 발신의 서한(사본)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다케시마 불법 점거

-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소위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라인 안쪽의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내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라인 내로 출어한 일본어선이 한국측에 나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며 일본측에는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 협의기관인 일·미 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에도, 미국이 다케시마를 명확히 일본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1953년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해인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향해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측은 현재까지도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속소나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불법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엄중한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철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해설

이승만 라인

1952년 1월 18일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해·동중국해의 공해상에 국제법에 반해 설정한 라인.



한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군함에 나포되어 약 2개월간 억류된 후 석방된 일본인 어민(1953년 11월) (사진: 요미우리신문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 제안

- 일본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해 온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어업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 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 9월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1962년 3월 일한외상회담에서도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의 3번째 회부제안도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 당사자의 재판회부에 관한 동의를 있어야 비로소 수속이 개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수속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 또한,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미국대사의 귀국 보고를 보면,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제안을 한국측에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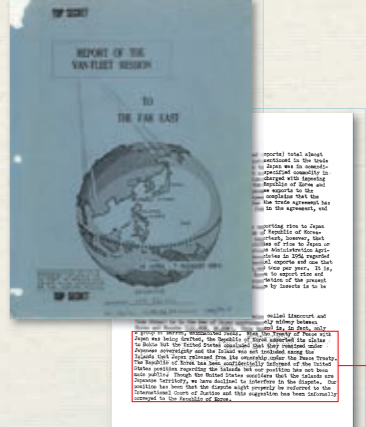
키워드 해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유엔의 기타 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취득한 기관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며, 개인이나 민간기관, 국제기관에는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있는 네덜란드·헤이그의 평화궁 (사진: ANP/지지통신 포토)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제안을 한국측에 비공식적으로 했다

a group of barren, uninhabited rocks.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밴 플리트 미국대사의 귀국보고(사본)

Part 2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인지

●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마쓰시마'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혹은 '이소타케시마'로 불렸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시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양가는 장군가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배에 걸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채취한 전복은 장군가 등에 현상하여, 이른바 이 섬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 공인하에 행했습니다.

그 동안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뱃길에 있는 다케시마는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지로서, 또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해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들 섬에 대한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지만,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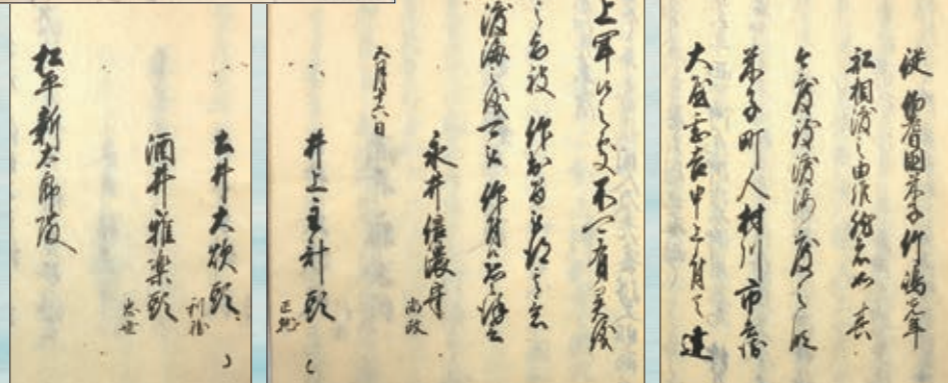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영유

● 1618년(주) 돗토리번 호우키노쿠니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는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 도항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양가는 교대로 매년 한 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 채취, 강치 포획, 수목 벌채 등의 일에 종사했습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6년)
(사진제공 : 메이지대학 도서관)



'도해 면허(사본)' (《다케시마 도해유래기발서》 수록)
(소장·사진제공 : 돗토리현립박물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다케시마에서는 1900년대 초기부터 강치 포획이 본격화되어 과열 경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1904년 강치 포획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다케시마의 임대를 청원했습니다. 이를 접수한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습니다.

●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했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등에 의거해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오키도청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습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사진제공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 국립공문서관)



다케시마에서는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가 왕성했다.
(1930년대경) (사진 : 개인소장[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제공])



1909년 경의 다케시마 어업회사 (사진 : 가와카미 겐조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고근소인(古今書院)]에서)

Part 3 다케시마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 답합니다

Q.1

한국측의 고지도·고문헌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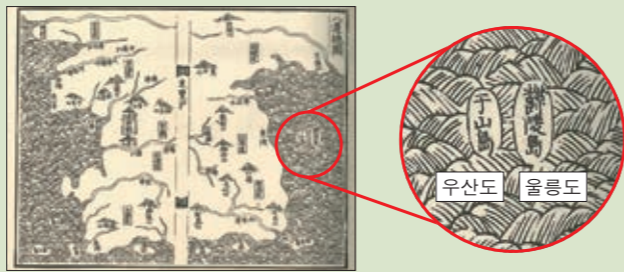
A.1

아니요, 한국측은 한국의 고지도·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지도에 대해서

한국측에는 16세기 이후의 조선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조선지도에 나타나는 우산도는 어느 것도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고,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렸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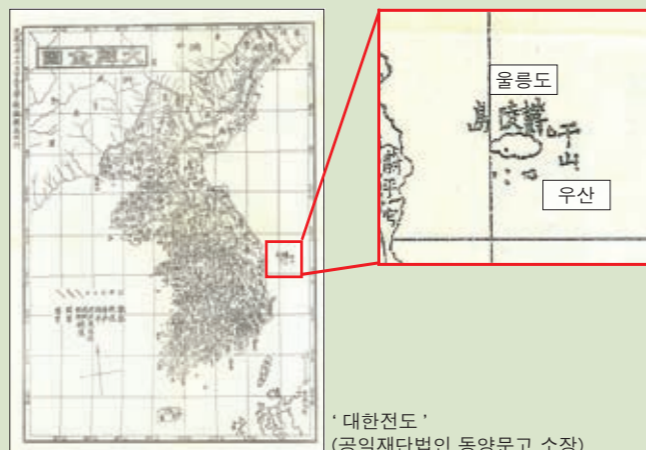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사본)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 조선의 고문헌에 우산·울릉 2개의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했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울릉은 원래 1개의 섬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 중에 나오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산출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측의 고문헌에는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하는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의 조선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진 것도 나옵니다. 1899년에 나온 ‘대한전도’는 위도와 경도가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입니다만, 울릉도의 바로 가까운 위치에 우산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산은 현재의 죽서라고 생각되며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대한전도’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 소장)

Q.2

1905년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A.2

아니요, 한국측으로부터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세

Q&A1에도 있듯이,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명칭이 나오는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지도나 고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또는 18세기 이후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처럼 울릉도 곁에 있는 별개의 작은 섬(죽서)이지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측은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년)에 의해 설치된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이 ‘석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은 ‘석(돌)’은 한국의 방언으로 ‘독’이라고도 발음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고 한다면, 왜 칙령에서 ‘독도’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왜 ‘석도’라는 섬 명칭이 사용되었는가, 애초부터 왜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가령 칙령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지칭한다고 해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A.3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의 영토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세

한국측은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 및 동 제1033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각서에 있어서도 ‘영토귀속의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이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SCAPIN 제677호 제3항에 ‘일본이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1천 개의 인접 제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중략)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6항에는 ‘이 지령 중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제도도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제도도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